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7호		
건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안		
제안(출)자	서초구청장	제안(출)년월일	2018. 08. 24.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심 경 석		

I. 제안내용

1. 제안이유

- 「동물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 보호와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동물보호 정책을 추진하여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 나.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9조)
- 다.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라. 길고양이의 관리 등에 관한 운영 사항 (안 제20조)
- 마. 동물복지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바.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
- 사. 동물보호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 아.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부서의견 수렴 완료
- 라. 기 타 :
 - 1) 입법예고 : 2018. 7. 5. ~ 2018. 7. 25. (20일간)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의뢰 결과 권고사항 반영
 -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임기의 연임차수 제한 규정을 추가
 - 4) 성별영향분석 : 여성보육과 의뢰 결과 권고사항 불수용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내용을 단순 재기재한 것으로, 규정할 실익이 없음

II. 검토 의견

-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는 2012년 9,000억원에서 2017년 2조 3,000억원 규모로 급성장 하였고, 2020년에는 6조원대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유기견 문제와 동물학대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동물보호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동물보호 대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조(구청장의 의무)에서는 구청장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서초구민의 동물보호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서는 서초구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동물복지사업의 지원)에서는 동물복지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규정하였음.
- 안 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부터 안 제9조에서는(위원회의 구성)에서는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와 안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의무와 등록 방법,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12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부터 안 제13조(동물보호센터 감독)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에서는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에 대한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15조(보호동물의 공고)에서는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문을 작성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16조(동물보호 및 관리)에서는 유기동물보호담당자의 지정, 공수의사의 진료 등 유기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17조(동물의 반환 등)에서는 유기동물의 반환에 대한 방법, 절차를

- 규정하였고, 유기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18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에서는 피학대동물의 구조와 보호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소유권이 서초구로 귀속된 경우 분양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19조(소요경비의 징수)에서는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사용된 경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20조(길고양이의 관리 등)에서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 관리 및 중성화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21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에서는 구청장은 동물 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이나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22조(출입·검사)에서는 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 사육·관리·보호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해당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23조(동물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서는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에서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25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위촉 등)에서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26조(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에서는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유기동물의 구조·보호,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을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동물학대 및 유기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동물보호 및 관리를 체계화하여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제정조례안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강북구·강서구·광진구 등 13개 자치구에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서초구 유기동물 보호센터 실적

년도	유기동물 처리내역						축종별 처리실적			
	계	반환	입양	자연사	안락사	보호	계	개	고양이	기타
2016년	178	44	42	33	57	2	178	113	56	9
2017년	195	51	37	37	63	7	195	131	56	8

☞ 서초구 동물 구조·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TNR(중성화)사업 실적

구분	총 계		동물구조보호관리		길고양이 T.N.R		위탁업체
	처리두수	집행액	처리두수	집행액	처리두수	집행액	
2017년	811	24,863,200	192	30,720,000	619	62,959,000	(사)한국 동물구조 관리협회
2016년	580	68,366,600	171	27,294,000	409	41,072,600	
2015년	651	67,071,600	181	17,862,000	470	49,209,600	
2014년	463	47,999,000	239	17,864,000	259	30,135,000	

○ 다만, 본 조례안의 일부 규정이 상위법에 맞지 않거나, 내용이 중복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 조례안의 일부 규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첫째, 안 제4조제3항에서 구청장이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동물복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6조제1항에서 동물복지위원회의 자문 대상에 동물복지계획 수립에 대하여 중복되어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 안 제4조제3항을 삭제

- 둘째, 안 제18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하 “서초구”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8조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서초구’로 각각 수정함.

- 셋째, 안 제18조제5항에서 ‘소유자’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하여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한 “해당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할 경우 법 제14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14조가 아닌 조례안 제17조를 준용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 안 제18조제5항을 삭제하고 안 제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

조 례 안	수 정 안
제18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④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 기한이 끝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 하여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u>지방자치단체</u> 로 귀속된 경우 구청장은 <u>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u> ⑤ <u>소유자가 해당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할 경우 법 제14조를 준용한다.</u>	제18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④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 기한이 끝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 하여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u>서초구</u> 로 귀속된 경우 구청장은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u>해당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할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u> <u><삭 제></u>

- 넷째, 안 제19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보호조치에 사용된 경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9조제2항에서는 ‘별표1’을 근거로 사용된 경비를 산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그러나 ‘별표1’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 16조제3항에 따른 산정기준으로서 서울시에서는 ‘별표1’의 산정기준은 소요경비 산출이 용이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하에, 지난 2017.9.21.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16조를 전면 개정하면서 ‘별표1’이 삭제되었음. 따라서 ‘별표1’을 삭제하고 안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 례 안	수 정 안
제19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제19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산정기준은 <u>별표1과 같다.</u>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산정기준은 <u>『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16조를 준용한다.</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Ⅲ. 참고자료

1. 관계법규
2. 수정안
3. 전국 반려동물 놀이터 현황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13., 2017. 3. 21.>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 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5.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 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9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3조,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 ⑤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6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6. 제39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하는 경우
- ⑧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 ⑨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 ⑩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제19조(보호비용의 부담)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 ②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제20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

-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 ③ 제1항에 따른 기증·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 ①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운영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에 따른 처리는 수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 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33조에 따라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제25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구성이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본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다른 동물 실험시행기관과 공동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을 하려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9조(출입·검사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1. 동물 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 2.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 3.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정명령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영업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 1.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 2.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 3. 제2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자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할 때에는 출입·검사 시작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입·검사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검사 계획을 미리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검사를 착수할 때에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1. 출입·검사 목적
 - 2. 출입·검사 기간 및 장소
 - 3. 관계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 4. 출입·검사의 범위 및 내용
 - 5. 제출할 자료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1. 제4조제1항의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3.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와 유실·유기동물 등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
 4.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5.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현황 등에 관한 사항
 6.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허가와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7. 제38조의2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와 관련된 사항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 3. 20.>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7조(공고)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7조에 따라 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공고를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보호 공고문을 작성하여 다른 방법으로 게시하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내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20.>
-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체관리카드와 보호동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20.>

제14조(동물보호감시원의 자격 등)

- 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20.>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20.>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동물관리학·애완동물학·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4. 그 밖에 동물보호·동물복지·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③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20.>

1. 법 제7조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2. 법 제8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운송과 반려동물 전달 방법에 대한 지도·감독
- 3의2. 법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도살방법에 대한 지도
- 3의3.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
4.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지정되는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감독
 5. 법 제2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감독
 6.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의 시설·인력 등 등록 또는 허가사항, 준수사항,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감독
 7. 법 제39조에 따른 조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의 이행 여부 등에 관한 확인·지도
 8.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대한 지도
 9. 그 밖에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16조(소요경비의 징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은 구조·보호한 동물 마리당 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9.21.]

조 례 안	수 정 안
<p>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p>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u>구청장은 동물복지계획을 수립 하려는 경우 제6조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u></p> <p>④ (생략)</p>	<p>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p> <p>① (생략)</p> <p>② (생략)</p> <p><삭제></p> <p>③ (조례안 제4항과 같음)</p>
<p>제18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p>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u>구청장은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u></p> <p>④ <u>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끝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경우 구청장은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u></p> <p>⑤ <u>소유자가 해당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할 경우 법 제14조를 준용한다.</u></p>	<p>제18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구청장은 소유권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로 한다)’로</u> ----- -----</p> <p>④ ----- ----- ----- <u>서초구로 귀속된 경우 구청장은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할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u></p> <p><삭제></p>

조 례 안	수 정 안
<p>제19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p> <p>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산정기준은 <u>별표1과 같다.</u></p> <p>③ (생 략)</p>	<p>제19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산정기준은 <u>『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16조를 준용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첨부3

전국 반려동물 놀이터 현황

(2018년 8월)

연번	지역	시설명	장소	시설규모	비고	
1	서울	반려견 놀이터 (어린이 공원)	광진구 능동로216	747㎡		
2		반려견 놀이터 (월드컵 공원)	마포구 하늘농원로 108-1	1,638㎡		
3		반려견 놀이터 (보라매 공원)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1,300㎡		
4		도봉구 반려견놀이터 (초안산 근린공원)	도봉구 해동로 3길 48-11			
5	인천	반려동물 놀이터 (인천 대공원)	남동구 장수동297번지	3,823㎡	2018.7.2개장	
6	울산	애견운동 공원	남구 남부순환도로 209	1,750㎡		
7~10	경기도	성남	탄천 반려견 놀이공간	분당구(금곡,정자,야탑,수진) 탄천변 일대(4개소)		
11			반려동물 놀이공간 (중앙공원)	분당구 수내동 65	187㎡	
12			반려동물 놀이공간 (율동공원)	분당구 율동 412	675㎡	
			반려동물 놀이공간 (단대공원)	수정구 수정남로 268		
13	고양	반려견 놀이터 (일산 호수공원)	일산 동구 장항동903			
14		수원	애견 놀이터 (광고호수공원)	영토구 하동1008	3,524㎡	2억원
15	동물 놀이터 (호매실동 매화공원)		권선구 금곡로 184			
16	용인		반려견 놀이공원 (기흥레스피아 호수공원)	기흥구 중부대로 640		
17		반려동물 놀이터 (기흥 호수공원)	기흥구 하길동	4,000㎡		
18	부천	반려견 놀이터 (상동 호수공원)	부천 조마루로 15	850㎡		
19	안양	삼막 애견공원	제2경인고속도로 삼막IC 교통광장(석수동 18번지)	11,942㎡	2018.7.8 2억2천만원	
20	충남	천안	반려견 놀이터	동남구 신부동 143-1	1,500㎡	
21	전북	임실	애견 훈련장(놀이터)	오수면 금양리 252-1		
			반려동물 테마클러스티 조성	공공동물장묘시설, 추모공원	'18~'19 (2년)	8,680㎡ 50억